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157호 2016. 03. 15.(화)

##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3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3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386호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3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0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 【안 제1조~제2조】
- 조직·인력 운용 및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안 제3조~제4조】
-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안 제5조】
- 지도·감독 【안 제6조】
  -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기관의 사무 총괄 지도·감독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기구·정원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등의 규정 제·개정 시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안 제7조】
-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8조~제9조】
  -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가능
  - 위원회 간사 : 출자·출연 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
- 기관장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 【안 제11조】
  -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 성과계약 체결
  -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 기간 : 1월1일 ~ 12월31일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서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계약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

○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안 제12조~제13조】

- 경영실적 평가계획 수립 통보(매년 12월)
-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진단 수행(경영평가단 구성 운영 또는 전문 기관 위탁)

○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및 경영실적 평가 위탁 【안 제14조~제15조】

### 3. 의견제출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560-4064,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총괄 현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2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2.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한명이 된 때

### 제3장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6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서구의회 의원 제외)
2. 구청장이 지명하는 서구 공무원(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범위)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소집
2. 회의서류 작성 및 보고
3. 회의록의 작성·관리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건 발생 시 제안설명은 주무부서의 장이 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

제10조(평가의 종류)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11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서구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서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인천광역시 및 서구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

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경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 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경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

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7.01.01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381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3. 14.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개정이유

주민참여 예산제의 각 위원회 별 임기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참여를 더욱 용이하도록 하고 규정 실정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 제한 폐지 (안 제9조)

(현행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개정 연임 조항 삭제)

나.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 조항 개정 (안 제13조)

(현행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두 차례만 연임 가능)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55, 팩스 560-270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주민참여 예산제의 각 위원회 별 임기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참여를 더욱 용이하도록 하고 구정 실정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 제한 폐지 (안 제9조)

(현행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개정 연임 조항 삭제)

나.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 조항 개정 (안 제13조)

(현행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두 차례만 연임 가능)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4. 참고사항

가. 개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주민”이라 함은”을 “”주민”이란”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같은 조 2항 중 “”동 단위 단체”라 함은”을 “”동 단위 단체”란”으로 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한다.

제18조제7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중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u>인천광역시 서구</u>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인천광역시 서구</u>----- -----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u>주민</u>"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 <u>인천광역시서구</u>(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p> <p>2. (생략)</p> <p>② 이 조례에서 "<u>동 단위 단체</u>"라 함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 --"<u>주민</u>"이란----- ----- -----. 1. <u>인천광역시 서구</u>----- ----- ----- 2. (현행과 같음) ② -----"<u>동 단위 단체</u>"란----- ----- -----.</p>
<p>제5조(구청장의 책무) <u>인천광역시 서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p>	<p>제5조(구청장의 책무) <u>인천광역시 서구청장</u>----- ----- ----- ----- ----- -----</p>

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생략)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14조(주민위원회 운영원칙)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등) ① ~ ⑥ (생략)

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위원회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두 차례만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주민위원회 운영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  
-----  
-----.

제18조(분과위원회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운영에 -----  
-----  
-----.

<p><u>제23조(위원의 임기)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2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민관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u>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u>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제2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u> ----- -----.</p>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386호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3. 1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지속가능발전법 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법률을 반영하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의 명칭변경, 기본이념 조항의 신설 및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방의제21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명칭을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
- 협의회 명칭을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  
(안 제1조)
- 명칭변경에 따른 협의회 기본이념 신설 및 관련조항 정비(안 제2조의2 등)
- 재정지원 항목을 종전의 “소요사업비”에서 “운영비, 인건비, 실천사업비, 기타 경비”로 구체적으로 명기(안 제18조)
- 위원 위·해촉권자를 “공동대표”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매기 출범시의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안 제4조)
- 기타 불합리한 규정 정비 및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한 일부조문 개정(안 제2조~제12조, 제15조~제19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 주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전화 : 560-4062, 팩스 : 560-2703

###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이하 “서구”라 한다)”를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 권고사항인 지방의제21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로 하고, 같은 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 “위하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 서구의”를 “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로 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미래 우리 후손의 인간다운 삶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발과 보

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말한다.”를  
 “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이념)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  
 록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실천추진”을 “실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푸른희  
 망 서구의제21”을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  
 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를 “인천  
 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3인”을 “3명”으로, “150  
 인”을 “15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푸른희망 서구의제21”을 “협  
 의회”로, “관련분야 공무원,학계,기업,구의회 의원,기타”를 “관련 분야 공  
 무원, 학계, 기업, 시·구의회 의원, 그 밖의”로, “자로서 공동대표가 위  
 촉하는 자가 된다.”를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다  
 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은 당해 재직  
 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

로 하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6조 중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의장단의 임기에 준용한다.”를 “의장단의 임기는 제4조제4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대표는”를 “구청장은”으로 하고,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제5조 제2항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30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30인”을 “30명”으로 한다.

제10조의1를 제10조의2로 한다.

제10조의2(중전의 제10조의1)제1항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년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15조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비치하여야 한다.”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관계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17조 중 “서구의제21”을 “서구의제21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협의회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

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
2. 협의회 실천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8조의1를 제18조의2로 한다.

제18조의2(종전의 제18호의1)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인천광역시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행동계획인 푸른희망 서구의제21을 작성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푸른희망 서구의제21"이라 함은 서구의 주민·기업·구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코자 하는 지역단위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u>지속 가능한 개발을</u> 위해 주민·기업·구가 실천해</p>	<p><u>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지속가능발전법</u>」에 따라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 권고사항인 <u>지방의제 21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뜻은</u>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u></p>

야 할 과제를 말한다.

- 2.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 함은 미래 우리 후손의 인간다운 삶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푸른희망 서구의제21의 작성 및 실천추진에 관한 사항
- 2.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 3. 푸른희망 서구의제21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계몽사업 및 시민참여 운동 전개에 관한

-----.

-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2조의2(기본이념)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사업) -----  
-----.

- 1. -----  
---실천-----
- 2. ----- 지속 가능한 발전-----  
-----
- 3. 협회의 -----  
-----  
-----

사항

4.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회의 구성) ①협회는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기업대표, 주민대표 등 3인의 공동대표를 포함한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푸른희망 서구의제21에 관심이 있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구민, 관련분야 공무원, 학계,기업,구의회 의원,기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로서 공동대표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관련분야 실·과장 및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한다.

④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은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협회의 기구와 임원) ①

----

4. 그 밖에 -----  
-----

제4조(협회의 구성) ①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3명-----  
--150명-----  
----.

②----- 협의회-----  
----- 관련 분야 공무원, 학계, 기업, 시·구의회 의원, 그 밖의 -----  
---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관련 분야 -----  
-----.

④ -----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협회의 기구와 임원) ①

<p>· ② (생략)</p> <p>③협의회에는 <u>3인</u>의 공동대표로 구성된 의장단을 둔다.</p>	<p>· ② (현행과 같음)</p> <p>③----- <u>3명</u>----- -----.</p>
<p>④·⑤ (생략)</p> <p>제6조(의장단의 임기) <u>제4조 제3항</u>의 규정은 의장단의 임기에 준용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장단의 임기) <u>의장단의 임기</u>는 제4조제4항에 따른다.</p>
<p>제7조(위원의 해촉) <u>공동대표</u>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u>1</u>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u>기타</u>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p> <p>2.·3. (생략)</p> <p>4. <u>기타 제5조 제2항</u>의 의장단에서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을 경우</p>	<p>제7조(위원의 해촉) <u>구청장</u>은----- ----- <u>어느 하나</u>에 ----- -----.</p> <p>1. ----- ----- <u>그 밖의</u> ----- -----</p> <p>2.·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 -----</p>
<p>제8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① (생략)</p> <p>②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 4. (생략)</p> <p>5. <u>기타</u> 협의회 주요업무처리에 관한 사항</p>	<p>제8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 -----</p>
<p>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p>	<p>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p>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구의원, 공무원 등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4. (생략)

5. 기타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각 분과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제10조의1(감사) ① 협의회에 3인 이내의 감사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② (생략)

제11조(사무국) ① (생략)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  
-----  
----- 30명 -----  
-----  
-----.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30명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감사) ① ----- 3명  
-----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